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채용후보자 등록 시 2통씩 제출하도록 한 일부 서류들을 1통으로 줄이고, 「보안업무규정」 제36조에 따라 신원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신원진술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채용후보자등록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자 함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신원조사회보서(「보안업무규정」 제36조에 따라 신원조사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)

제29조제1항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중 “2통”을 각각 “1통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9호 중 “5장”을 “3장”으로 한다.

8. 민간인신원진술서 2통(「보안업무규정」 제36조에 따라 신원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)

별표 1의 순번 1의 신규임용의 신원조사회보서 1통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신원조사회보서	1통	「보안업무규정」 제36 조에 따라 신원조사를 받은 경우에만 첨부
---------	----	---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인사기록의 종류)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· 2. (생 략) 3. <u>신원조사회보서</u> 4. ~ 9. (생 략)	제11조(인사기록의 종류) ----- -----. 1. · 2. (현행과 같음) 3. <u>신원조사회보서(「보안업무규정」 제36조에 따라 신원조사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)</u> 4. ~ 9. (현행과 같음)
제29조(채용후보자 등록) ①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채용후보자등록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된 기한까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등록해야 한다. 다만, 시험실시권자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한 때에 제출한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. 1. · 2. 삭 제 3. 최종학력증명서 <u>2통</u> 4. 삭 제 5. 자격증 사본(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이	제29조(채용후보자 등록) ①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. 3. ----- <u>1통</u> 5. ----- -----

아닌 경우에 한한다) <u>2통</u>	----- <u>1통</u>
6. 경력증명서 <u>2통</u>	6. ----- <u>1통</u>
7. 소방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<u>2</u> <u>통</u>	7. ----- <u>1</u> <u>통</u>
8. 민간인신원진술서 <u>3통</u>	8. 민간인신원진술서 <u>2통</u> (「보 <u>안업무규정」 제36조에 따라</u> <u>신원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</u> <u>한다</u>)
9. 사진(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 신 명함판) <u>5장</u>	9. ----- ----- <u>3장</u>
②・③ (생 략)	②・③ (현행과 같음)